

제144회(임시회)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6인 발의) .....	1면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5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환의원 외 6인 발의) .....	17면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2면
3.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25면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8면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30면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33면

##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5
----------	------

발의연월일 : 2004. 9.

발 의 자 : 김복동 의원의 6인

### 1. 개정이유

-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함에 따라,
- 2004년도 우리구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에 대비하여 최고 1.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탄력세율을 적용한 지역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서 권한위임된 재산세의 세율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2004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의거 종로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5% 인하 조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 및 제188조제6항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건축물

(1)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600만원 이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2,200만원 이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3,000만원 이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35만6천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⑥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2.55
1,200만원 초과	30,600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600만원 이하	1,000분의 4.25
1,600만원 초과	47,600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2,200만원 이하	1,000분의 8.5
2,200만원 초과	98,600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3,000만원 이하	1,000분의 25.5
3,000만원 초과	302,6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42.5
4,000만원 초과	727,6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9.5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1호가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의2(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건축물</p> <p>가.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lt;과세표준&gt;</th>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lt;세 율&gt;</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2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000분의3</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200만원 초과</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6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000분의5</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600만원 초과</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2,2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000분의10</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2,200만원 초과</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3,0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000분의30</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3,000만원 초과</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4,0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000분의50</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4,000만원 초과</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분의70</td> </tr> </tbody> </table> <p>나.- 라.(생략)</p> <p>2.- 3. (생략)</p>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600만원 이하	1,000분의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2,200만원 이하	1,000분의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3,000만원 이하	1,000분의30	3,000만원 초과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 이하	1,000분의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70	<p>제21조의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건축물</p> <p>가.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lt;과세표준&gt;</th>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lt;세 율&gt;</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2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000분의 2.55</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200만원 초과</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30,600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6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000분의 4.25</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600만원 초과</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47,600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2,2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000분의 8.5</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2,200만원 초과</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98,600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3,0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000분의 25.5</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3,000만원 초과</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302,6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4,0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1,000분의 42.5</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4,000만원 초과</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727,6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분의 59.5</td> </tr> </tbody> </table> <p>나.- 라.(현행과 같음)</p> <p>2.- 3. (현행과 같음)</p>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2.55	1,200만원 초과	30,600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600만원 이하	1,000분의 4.25	1,600만원 초과	47,600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2,200만원 이하	1,000분의 8.5	2,200만원 초과	98,600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3,000만원 이하	1,000분의 25.5	3,000만원 초과	302,6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42.5	4,000만원 초과	727,6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9.5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600만원 이하	1,000분의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2,200만원 이하	1,000분의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3,000만원 이하	1,000분의30																																																
3,000만원 초과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 이하	1,000분의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70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2.55																																																
1,200만원 초과	30,600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600만원 이하	1,000분의 4.25																																																
1,600만원 초과	47,600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2,200만원 이하	1,000분의 8.5																																																
2,200만원 초과	98,600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3,000만원 이하	1,000분의 25.5																																																
3,000만원 초과	302,6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42.5																																																
4,000만원 초과	727,6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9.5																																																